

무궁화11호 정기수리(선체) 용역 사양서

I.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사양서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1호(알루미늄 강선, 168톤) 정기수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사양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수리를 발주한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기관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수리당해 국가어업지도선의 선장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나. “검사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동법시행령 제55조(검사)의 규정에 의거 소속 기관장이 관계직원 중 본선의 완성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 다. “발주자“라 함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 라.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리당해 선박의 수리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공확인)

1. 감독관은 예정 공정계획에 따라 수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수리진행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사양서 및 내역서상의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수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중단토록 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리기간 중 간접재료비에 해당되는 사소한 누락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사항으로 하며 사양서 및 내역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검토·승인된 결과에 따라 시공토록 조치하며 감독관은 감독일지에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소요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리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착수 시 부터 완수 시까지의 수리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 시 사진첩 3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재관리)

1. 본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또는 JIS 규격이상의 것이거나 국가공인 선박검사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필한 재료나 부품을 감독관 확인(증서)후 사용하여야 하고, 완제품 시공시에는 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2.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계약상대자 임의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 할 수 있으며 반출된 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적절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리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용역 시행결과 발생한 불용품 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규칙」 제47조(폐품처리)에 의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불용품(폐품)을 완수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제5조(매몰부분 등 검사)

계약상대자는 수리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수리 후 사양서 및 내역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 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고, 사진 촬영 및 계측기록표를 작성하는 등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6조(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1. 계약상대자는 수리 착수일로부터 완수일까지 본 수리선의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수리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시공이 불가능할 때
 -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할 때
 - 다. 계약상대자가 수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용역현장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위험·유해작업에 대하여 관련 자격소유자·교육수료자만 투입한다.

6. 계약상대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고, 작업전 매일 T.B.M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8.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 중 중대재해 예방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수리업무 공정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안전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제공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서류제출)

1.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감독일지
 - 나. 수리진도보고서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정기수리 완료(완수) 보고 시 붙임 서류(전자문서) : 감독일지, 수리진도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감독관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착수시(각 3부)
 - 1) 착수계
 - 2) 수리일정표
 - 3) 산출내역서(각 2부)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교육 증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위험·유해 작업자의 자격증·교육수료증, 안전장비 현황 등 포함

5) 산업재해율 확인서

나. 완수시(각 3부)

1) 완수계

2) 완성사양서, 완성검사조서, 감독조서

3) 수리 사진첩

4)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관련 사진 및 영수증 포함)

* 안전보건관리비는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정산하며 미사용분에 대해 반납한다.

5) 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서류 일체

6) 기타 필요한 사항(품질확인 증서 등)

제8조(검사신청)

1. 수리에 관계된 모든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검사신청 및 검사집행에 따른 수수료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완성검사는 수리 완료 후 감독관 및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제9조(수리에 관한 서류의 보완)

본 수리의 계약서류는 일반사항, 사양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사양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 되고 사양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보안 및 기타사항)

1. 본 수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계약 수리기간 이내로 한다.

2. 작업 실시 전 참여인원의 최소화를 위해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 정규직원 외 또는 참여자 교체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
3. 감독관이 출입자를 통제하는 일과시간(09~18시) 중에 수리를 진행하며 일과시간 이전·후 또는 공휴일에는 감독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용역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수리업무 관리자를 지정, 용역현장에 상시 주재토록 하여 선박 감독관 및 검사관과 수리와 관련한 업무협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역기간 중, 1인 이상의 당직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수리선의 제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역기간 중 안전사고와 용접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
7. 감염병(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해어업관리단 및 수리 지도선의 방역조치 등에 최대한 협조한다.
8. 계약당사자는 계약부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국가어업지도선 수리와 관련된 업무가 국가보안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9. 계약당사자는 서해어업관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비밀 포함)을 계약 만료 또는 현장책임자의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절대 누설, 공포,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10.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알게 된 보안관련 사항을 외부로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11. 본 수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한다.

II. 선체 부문

1. Gyro Compass 및 Auto Pilot 분해·수리

- Gyro Compass를 분해하여 각 부를 소제·점검·세척·연마·조정·주유하고, Power Inverter Unit 및 예감부(Rotor 및 Bearing 등) 등을 분해 점검하여 불량부품은 교체하고 소음·발열·진동·오차 등이 없이 정상 작동되게 한다.
- Auto Pilot의 Steering Stand(Feed Back Unit, Control 및 Power Box 포함) 및 Repeat Back Unit 등을 분해·소제·점검·조정·주유하고 Over Load 및 No Voltage 등의 Alarm 및 점등 상태를 점검하여 오차 없이 운용자가 원하는 설정 침로(Set Course)에 따라 선박이 정침하는 등 이상 없이 정상 작동되게 한다.
- 수리 완료 후 정상작동 여부 점검한다.

가. Gyro Compass 분해수리 - Gyro Compass O/H - Power Inverter Unit - 예감부(Rotor 및 Bearing)	TG-8000 분해·소제·점검·연마 등 분해 점검, 불량부품 교체 등 분해 점검, 불량부품 교체 등	1식
나. Auto Pilot 분해수리 - Steering Stand - Repeat Back Unit	PR-6000 분해·소제·점검 등 분해·소제·점검 등	1식

2. Chain Stopper 안전핀 고정대 신환

- 작업 전 감독관 입회 하에 현장 수리 개소 파악 및 감독관과 수리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다.
- 수리개소 파악 및 협의 내용 토대로 Chain Stopper 안전핀 고정대 부위를 제거하고 신규 제작 후 신환한다.

3. 폼 웬다 고정 CLEAT 및 고속단정 계류색 고박용 CLEAT 설치

- 작업 전 감독관 입회 하에 현장 수리 개소 파악 및 감독관과 수리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다.
- 수리개소 파악 및 협의 내용 토대로 Bulwark(8개소)에 폼 웬다 고정 CLEAT를 견고히 설치한다.
- 수리개소 파악 및 협의 내용 토대로 계류색 고박용 CLEAT를 선미 불워크(1개소)를 견고히 설치한다.

가. 폼 웬다 고정 CLEAT 설치 * 지지판 용접 후 CLEAT 용접할 것	300L, 알루미늄	8식
나. 고속단정 계류색 CLEAT 설치 * 지지판 용접 후 CLEAT 용접할 것	300L, 알루미늄	1식

4. 선수 우현 방현대 신환 및 고속단정 승·하강용 방현대 설치

- 작업 전 감독관 입회 하에 현장 수리 개소 파악 및 감독관과 수리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다.
- 수리개소 파악 및 협의 내용 토대로 선수 우현 외판에 위치한 손상 방현대 1개소 철거하고 신규제작한 방현대로 신환한다.

- 수리개소 파악 및 협의 내용 토대로 고속단정 승·하강시 고속단정 파손 방지를 위해 좌현 Bulwark 및 선미 외판 부위에 볼트 체결 방식의 방현대를 제작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견고히 설치한다.

선수 우현 방현대	웬다 길이 약2m, 현장 참조	1식
고속단정 승·하강용 방현대 제작·설치	웬다 길이 약4m, 규격 150x150x150mm	2식

5. 조타실 Wiper 청수 Pipe 등 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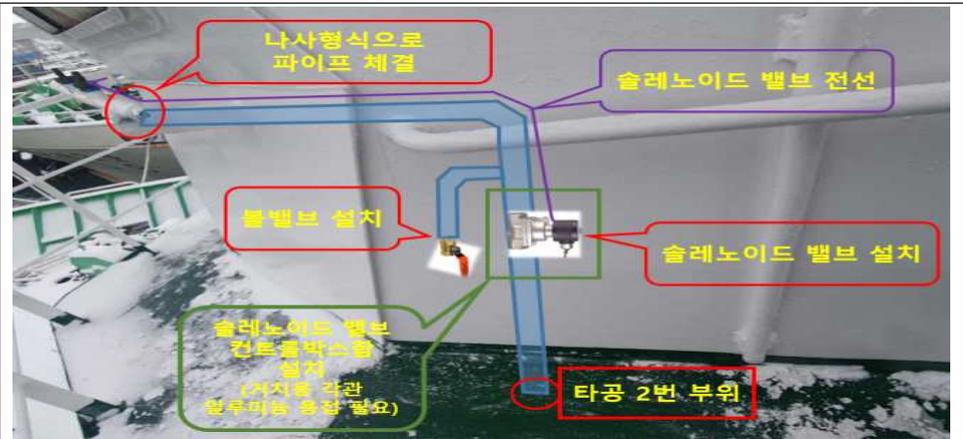
- 작업 전 감독관 입회 하에 현장 수리 개소 파악 및 감독관과 수리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다.
- 수리개소 파악 및 협의 내용 토대로 조타실 WIPER 청수파이프, 각종밸브 등을 외부로 이설한다.
- 청수파이프 외부 이설 후 동파 방지를 위한 테이핑 작업을 실시한다.
- 이설 완료 후 조타실 WIPER 청수 정상배출 및 수리개소·선내 등 누수 여부 점검한다.

품 명	규 격	수 량
Pipe	스텐, 15A, 5m	1식
90도 Elbow	스텐, 15A	1개
Tee	스텐, 15A	1개
Flange	스텐, 15A	10개
앵글 스톱 밸브	스텐, 15A	1개
볼밸브	스텐, 15A, 1/2"	2개

슬레노이드 밸브	스텐, 15A, 국내제품	1개
Nipple 등 잡자재	스텐, 15A	1식
각관(슬레노이드 밸브 거치대용)	알루미늄, 30x150mm	2개
컨트롤박스함(사각형 박스, 힌지타입)	플라스틱, 300x300mm	1개
동파방지 테이핑(보온재 포함)	5m	1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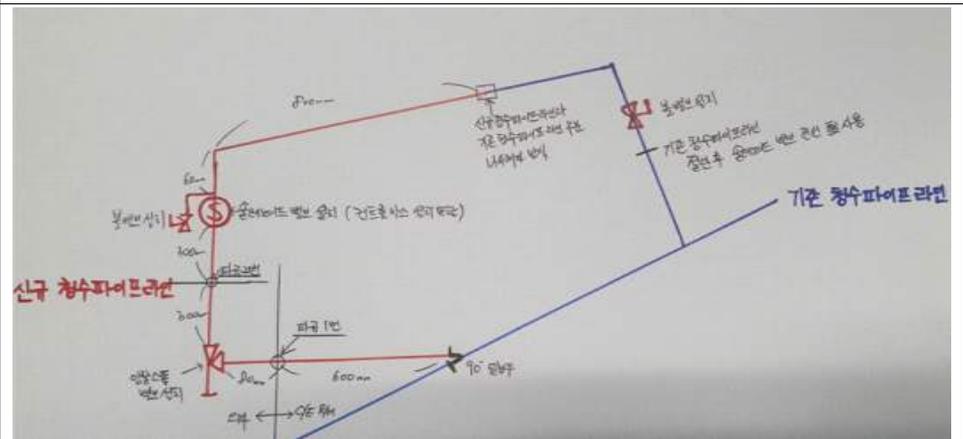
작업 모식도 1



작업 모식도 2



작업 모식도 3



청수 Pipe 및 각종밸브 설치도

6. 실내 데코타일 교체

- 작업 전 감독관 입회 하에 현장 수리 개소 파악 및 감독관과 수리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다.
- 수리개소 파악 및 협의 내용 토대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양질의 데코 타일로 교체한다.

가. 데코타일 교체		1식
- Below D.k 실내 주 통로	950cm×400cm	
- Upper D.k 실내 주 통로	1030cm×500cm	
- 조타실	440cm×470cm	
- 기관실	250cm×450cm	
- 서무실	440cm×330cm	
- 휴게실	440cm×210cm	

7. 선내 내부 청소 및 폐기물 배출 등

- 수리기간 중 발생한 폐품(교체품)은 일정 장소에 모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수리공사 중 더러워진 선체 내부(통로, 공용실, 조타실, E.C.R 등)는 세제 등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청소한 후 감독관에게 확인받도록 한다.

(기타사항)

1. 수리기간 중 작업자는 중대재해안전수칙을 엄수하여 매 작업시 마다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안전장구 착용, 감독관 배치, 2인 이상 조편성 및 현장 위험요소 상시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철저하여야 한다.
2. 매 작업 시 작업자는 중대재해안전보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수리공사 실시할 때에는 선체 내부(통로, 휴게실, 조타실 등) 및 외부구조물에 오염 방지 커버를 부착하여야 하고, 일일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을 반드시 실시하며, 수리 완료 전 더러워진 선체 내부(통로벽, 공용실, 조타실 등)를 세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소제한다.
4. 항만운송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선박의 청소(유창청소제외)·오물제거·소독·폐물수집 및 운반·화물고정·칠 등을 하는 행위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적법한 업체에 의한다.
5. 수리공사 중 선박에서 배출한 폐기물은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적법 처리 후 인도인수증을 본선에 전달하고, 청락 및 도장 중 발생한 폐기물 등 수리업체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녹, 빈 페인트 통, 붓 등)은 수리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6. 반드시, 수리공사중 안전사고와 용접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소화기 상시배치 등)하여 안전하게 작업한다.